

부 령

●노동부령 제213호

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04년11월25일

노동부장관 인

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

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자신과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근로자는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학자금 등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용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중인 저임금 근로자로 하였으나, 앞으로는 자신과 그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<노동부 제공>

제15855호

관

부

2004.11.25. (목요일)